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갈등유발 사
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 2024.3.12


여수시 조례 제2056호

붙임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
1부

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대상 시설” 을 “대상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“제3조제6호 및 제7호” 를 “제3조제7호 및 제8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가목 및 나목 중 “대상 시설” 을 각각 “대상시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제9호” 를 “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과 다목의 사회복지시설

제4조제1항 중 “대상 시설별” 을 “대상시설별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사전고지의 내용)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.

1. 대지위치
2. 용도 및 구조
3. 대지면적, 건축면적, 연면적
4. 건폐율, 용적률

5. 층수, 최고높이
6. 시설물의 종류
7. 인·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
8. 대상시설별 인·허가 담당부서
9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“행위자”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. | 2. -----대상시설 -----. |
| 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“사전고지 대상시설”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. | 4. ----- ----- ----- 제3조제7호 및 제8호----- ----- -----. |
| 5. (생 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
| 가.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(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)이 있는 지역 | 가. -----대상시설----- ----- ----- |
| 나.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| 나. -----대상시설----- ----- ----- |
| 제3조(사전고지대상) ① (생 략) | 제3조(사전고지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 | 2. ----- 제9호 가 |

| | |
|--|---|
| 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| 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|
| 〈신 설〉 |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과 다목의 사회복지시설 |
| 3. ~ 10. (생 략) | 4. ~ 11. (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4조(업무부서의 지정)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 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. | 제4조(업무부서의 지정) ① ----- ----- 대상시설별 ----- ---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사전고지의 내용) <u>사전고지</u> 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. | 제5조(사전고지의 내용) <u>제3조의 사전고지</u>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. 1. 대지위치 2. 용도 및 구조 3. 대지면적, 건축면적, 연면적 4. 건폐율, 용적률 5. 충수, 최고높이 6. 시설물의 종류 7. 인·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. 대상시설별 인·허가 담당부서 9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|
|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. 대지위치 나. 용도 및 구조 다. 대지면적, 건축면적, 연면적 라. 건폐율, 용적률 마. 충수, 최고높이 바. 시설물의 종류 2. 인·허가 접수일자 | |